대전보건대학교 대전중구체력인증센터 운영규정

2026. 05. 01. 최초제정

제1조(설치) 대전보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는 국민체력 100 사업 선정에 따라 대전보건대학교 대전중구체력인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목적) 센터는 과학적 체력관리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개인별 체력진단 및 운동 처방 등으로 생활체육 참여의 동기를 부여하고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체력측정 : 연령별로 규정된 6~7개 체력항목 측정
2. 체력인증 : 체력수준 우수자는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서 발급(1~6등급)
3. 운동처방 : 측정된 체력수준에 따른 개인 맞춤형 운동 처방 제공
4. 체력증진 교실 운영 : 저체력자를 중심으로 한 체력관리 지원
5. 기타 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

제4조(위치) 센터는 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대학 건물(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68 천우빌딩 5층)에 위치한다.

제5조(조직 구성)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을 두며 직책별 인원수는 표와 같다. 단, 센터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책별 인원수를 달리할 수 있다.

직 책	센터장	운동처방사	체력측정사	행정전담
인원수	1명	2명	2명	1명

1. “운동처방사”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2. “체력측정사”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또는 2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체력측정 관련 과목을 이수한 체육 관련 학과 졸업생(졸업예정자 포함)

제6조(센터장) 센터장은 대학의 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제7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과 대전광역시 중구청의 구비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공포일 이전 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추진 조치 및 선 시행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